

◇◇광역시 △△군 군민권익위원회 의결

의안번호 : 제2019-1호

민원제목 : 갑질횡포(확약서 징구)에 대한 이의신청

신 청 인 : ○○○○

피신청인 : ◇◇◇◇◇ △△△

결 과 : “인 용”

의 결 일 : 2019. 5. 2.

□ 신청취지

- ◇◇광역시 △△군 『▽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』에 따른 ▽▽천변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어 수차례 이의 제기 후 군수 입회하에 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굴착을 요구하자
- 해당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굴착 후 폐기물(폐토 등)이 발견되지 않을 시 ‘민원인이 민·형사상의 책임 부담, 각종 비용 지불,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’는 확약서를 요구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○ 추진경위

- 2012. 12. ~ 2013. 10. : 『▽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』 시행
- 2013. 4. 16. : 신청인 ○○○의 폐토 반입 및 콘크리트 구조물 매립에 대한 이의제기
 - 관계자 입회 후 임의 지정 굴착하였으나 폐토, 폐콘크리트 미확인
- 2013. 5. 15. : 경찰 고소(신청인 ○○○ → 군수, ○○○과장, 도급업체 등)
- 2013. 6. 3. : 경찰 입회하 시료 채취
 - 분석 결과 양호(시 ○○○○연구원)
- 2014. 4. 25. : 폐기물 발견에 따른 조치명령(군 → 도급업체)
- 2014. 5. 19. : 조치명령 완료

- 2014. 6. 27. :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로 조사관 현장 방문
 - 신청인 ○○○ 무단굴착
 - 폐기물 의심토양 성분분석 의뢰(→ 폐기물 성분 없음)
 - 일부 건설폐기물이 확인되었으나, 사업구간 외 하상바닥 이하 구간까지 굴착 확인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움
- 2019. 2. 13. : 군수 면담(열린군수실)
 - 군수 입회 하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요구
- 2019. 3. 18. : 해당부서(○○○○과) 확약서 제출요청

○ 2014. 4. 폐기물 일부가 발견되어 도급업체를 통해 조치 완료된 사항이나, 신청인은 해당 사업과 무관한 과거 매립된 투기물 등을 사업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

○ 따라서 굴착 전 아래의 조건을 전제한 확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

☞ 조건 1 : 하상은 『▽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』 시행 시 성토한 높이만큼 굴착

☞ 조건 2 : 폐기물 불법 매립 주장에 대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 상태로 오염된 흙, 과거 매립(투기)된 폐기물, 기존에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

□ 사실관계

○ 2019. 2. 13. 군수 면담 시 신청인 ○○○은 당시 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군수는 해당부서(○○○○과)에 재 굴착 후 매립여부 확인을 지시

○ 해당부서(○○○○과)에서는 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 매립, 공금횡령, 직무유기 등의 고소 및 수차례 민원제기와 재 굴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확약서를 요구

○ 확약서 내용

1. 본인 _____는 그간 수차례 ▽▽천 하천구역 내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관계자 고발 후 기 종결된 사건(○○경찰서 0000-000000)임에도 불구하고, 2012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0월 30일 까지 ◇◇광역시 △△군 ○○읍 ○○리 ▽▽천 일원에 시행한 「○○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」 사업(이하 '본 사업')구간에 대해서 본인 이 주장하는 성토재로 폐토(오염토)를 반입(32,155m³)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[첨부서류 1]의 지점(3개소)에 대하여 재 굴착을 요청합니다.
2. 본 사업으로 설치된 고수호안 및 저수호안 등의 시설물 안전을 위해 1항의 3개소 외에는 굴착을 하지 않으며, 호안 및 하상 굴착 시 본 사업에 시공한 범위(깊이) 내 만 굴착하고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상태로서 오염된 흙이나 오니, 과거 매립 (투기) 또는 유수흐름에 의한 폐기물, 기존에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 및 고의 성이 없이 폐기물 반출을 위한 선별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소량의 건설 폐기물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.
3. 만일 본인이 주장하는 폐토(작업과정에서 고의성 없이 매립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)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아래 각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 - ① ▽▽천 하천구역 내 폐기물매립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하천법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를 위반한 하천구역 내 토지의 굴착행위를 △△군청에 요구하였으며 △△군청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95조(벌칙) 등에 따른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 - ② 굴착에 사용된 장비임차료 및 동법 제29조 「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」에 따라 하천 훼손행위에 대한 원인자로서 원상복구비용(△△군에서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에 따른다)을 본인이 지불한다.
 - ③ 향후 「▽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」 사업구간 내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
2019 년 3 월 일

□ 확 약 인

○ 주 소 :

○ 생년월일 :

○ 성 명 :

(인)

○○군수 귀하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조
- 「하천법」 제33조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9조

□ 판단 및 결과

- 확약서 3-①의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, 제95조(벌칙)를 언급하나 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 굴착행위를 한 후 비용지급 등의 요구는 적정하지 않은 조문으로 판단되며,
- 3-③의 “향후 『▽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』 사업구간 내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”의 내용은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 향후 추가적인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임
- 따라서 확약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받거나,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인용을 구하고자 함